



# 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**취득세(부동산) 비과세감면결정처리(\*\*\*\*\*\_\*\*\*\*\***

\*\*\*\*\*에서 강남구 역삼동 \*\*\*\*\*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 부동산을 \*\*\*\*\*에 기부채납 함에 따라,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 감면신청을 하였기에 관계법령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비과세 감면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.

## 1. 지방세 감면신청 내역

(단위 : 원)

법인명	*****	*****	*****			
주 소	*****	취득원인	과세대상물건			
물건지	*****	신축 (임대주택)	토지(m <sup>2</sup> )	건물(m <sup>2</sup> )		
				2,990.61		
<b>과세표준</b>		<b>8,126,873,807</b>				
세 목	산출세액	세율	<b>감면(비과세)세액</b>	차인납부액	감면비율	비 고
취득세	*****	***	*****	*	****	
농특세	*	***	*	*	****	
(감)농특	*****	***	*****	*	****	
교육세	*	***	*	*		
<b>합 계</b>	<b>*****</b>		<b>*****</b>	<b>*</b>		

## 2. 관계법령

(1) 「지방세법」 제9조 【비과세】 제2항 :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(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